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821호
-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8월 06일
-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관광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 시장은 협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 협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6조의2제4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첨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지역관광협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신 설></p> | <p>제16조의2(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 설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p>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협의회의 설립허가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역관광협의회는 관광산업 관련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역·기초 단위 모두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경기, 세종, 인천, 전남, 충남 5곳에서 관광진흥조례에 지역관광협의회 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마포와 종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한편 기존 관광사업자 단체로서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가 존재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도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의 협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조례의 제·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이 가능하나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함으로써 근거를 견고히 하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역관광협의회는 기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지회인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수행업무와 상당부분 유사하여 혼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한국관광신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인가 신청 혼선야기’(16.5.6), 여행신문, ‘지역관광협의회 등장가능성에 긴장’(15.7.6.)) 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서 ‘시·도관광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의 실질적 단일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협회와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 ‘따로 또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관광 거버넌스 체계강화의 일환으로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관광협의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법 제43조제1항) |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정관 제4조) | 지역관광협의회 (법 제48조의9제4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관광 통계 •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 관리 • 회원의 공제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 관광안내소의 운영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관광산업 발전 도모 •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및 관광사업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광에 관한 통계조사 및 연구 •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용자 알선 및 추천 •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 관광산업의 인식제고 및 관광 안내소 운영 • 관광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 관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자산(타 기관의 위탁 자산 등)의 임대 및 전대 사업 •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기타 부수된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업무 중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서울특별시 관광산업 발전 도모’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관광협의회 업무 추진 시 기존 관광협회의 업무와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의거 ○○시 지역관광협의회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관광협의회”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①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부군수)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②간사는 회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회장은 당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군)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기초 지역관광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7항 및 민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기초 지역관광협의회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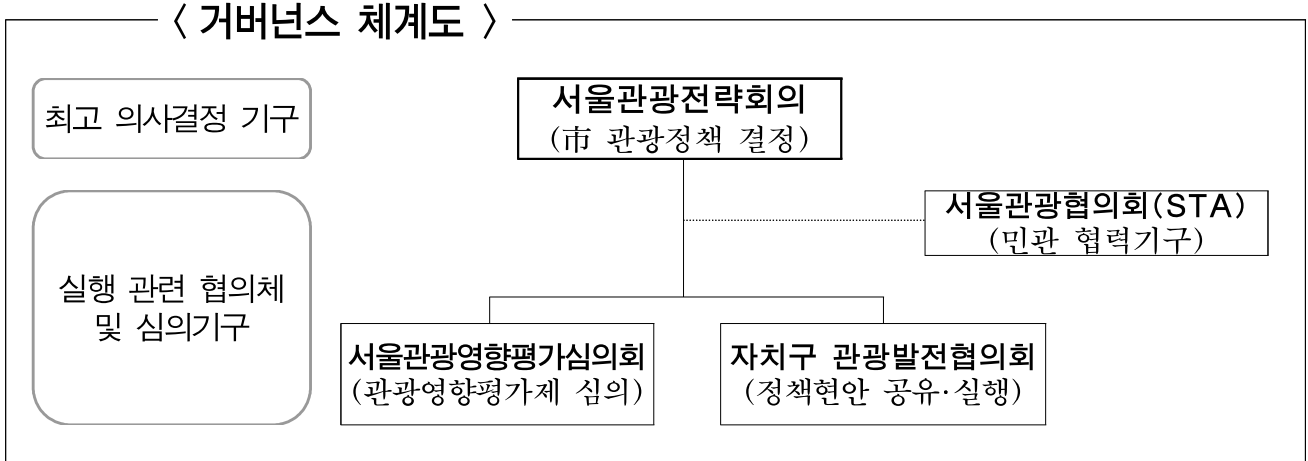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하 생략)

붙임 3 서울관광 거버넌스 체계 강화*

* 관광체육국(관광정책과),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p.104

□ 서울관광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서울시장 주재 「서울관광 전략회의」 확대 운영(반기별)

- 구 성 : 시장단, 서울시 관광 관련 실·국·본부장, 서울관광재단 대표 등
※ 필요시 관광업계, 학계, 자치구 등 참여
- 기 능 : 서울시 관광정책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관광정책 및 실·국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

○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관광 협의회(STA)」 구성·운영(반기별)

- 구 성 : 범 관광업계(관광사업자,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NGO 및 시민, 공공기관(시, 자치구, 재단 등) 등 참여
- 성 격 : 민관거버넌스형 협력기구,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기획·실행
- 운 영 :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서울시장, 민간대표)

○ 「서울관광 활성화 실무기구」 구성·운영(분기별) - 관광체육국장 주재

- 서울관광 영향평가심의회 : 대표성 있는 업계·학계 인사로 구성, 관광 관련 정책 사전 심의

〈 관광영향평가제(관광 관련 정책 사전심의제) 도입〉

- 목 적 : 관광 관련 사업 추진시 관광인지적 접근 강화로 사업효과 제고
- 대 상 : 도시재생, 공원, 이벤트·축제 등 관광객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운 영 :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광객 관점에서의 정책 기획여부 점검
- 근 거 : 서울시 관광진흥조례 개정, 제도 도입근거 마련('19년)

- 자치구 관광발전협의회 : 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정책 현안 공유, 실행

○ 신속·정확한 서울관광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위기상황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소통채널 구축, 대응절차 마련
- 메르스 등 서울관광 위기 및 극복과정 사례 정리, 관광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인가 신청 혼선 야기

한국관광신문 이영석 기자 2016.05.06.

- 관협중앙회 3일 이사회 개최 정관개정 위한 TF팀 구성
- 광역지역관광협의회 공동회장에 지역 부 단체장 부임

지역관광협의회 인가에 대해 문체부가 지역관광협회를 주축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인가하고, 지역관협은 협의회로 들어가라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지자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협회는 물론, 예술단체 및 학회, 관광사업자들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인가 신청이 쇄도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전라북도관광협회가 전라북도관광협의회 인가를 지역관광협회 중 최초로 받은 이후 16개 시, 도 관광협회 역시 지역관광협의회 인가를 받기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 아산에 있는 여행사가 지역관광협의회 신청서를 제출, 인가를 받기 전에 지역관광협회 회장단이 뒤늦게 수습을 한 일도 발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행업, 호텔업 등 업종별협회와 서울시관광협회, 국제회의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이들을 아우르는 서울시관광협회 결성 움직임도 다른 지자체보다 거셀 전망이다 가운데 일부 관광사업자들은 구청별로 접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상만 서울시관협 회장은 “시와 서울시관광협의회 구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며, 아직 신청서류를 접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인가는 작년 5월 18일 개정된 관진법 공포에 이어, 8월 19일 시행령이 발표됐다.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지자체 위탁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상영 지역관광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지역협회장 모임을 대구에서 개최 전북관협과는 달리 지역관광협회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시, 도 부단체장이 지역관광협의회 공동회장을 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별도 인가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제주관협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지원을 받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관광협의회 발족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결과 제주도와 전북을 제외하고 지역관광협회는 존속시키고, 별도로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 ‘광역지역관광협의회를 정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중앙회 임원으로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상정했으나 부결, TF팀을 구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강대철 세종시관협회장은 지역관광협회를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역관광협회가 없어질 경우, 다른 관광사업자가 관진법 45조에 의거해 지역관광협회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며, 향후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관광협회 산하에 지역관광협의회를 운영하다가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관광협회 중 첫 광역관광협의회 인가를 받은 최수연 전북관광협의회 회장은 “중앙회 역시 전국 광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기 위해 관협중앙회도 중앙관광협회로 개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안호 KATA 부회장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지역관광협회가 관진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관광협의회 인가를 받을 경우 회원사 확대는 물론, 지자체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지역관광협회 외 사업자들의 신청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중앙회 역시 지역관광협의회 발족으로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신설되는 지역관광협의회만 회원사로 흡수하려는 모습보다는 광역지역관광협의회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노석 관협중앙회 부회장은 “아직 지역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한 각 지자체의 조례가 안 나온 상태며, 지역관광협의회를 중앙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한국관광학회에 용역을 의뢰하고, TF팀을 구성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는 “지역관광협의회 인가는 지난 50년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고 회원사 회비로만 운영되던 지역관광협회가 관광사업체들은 물론 타 업종과 주민까지 회원사로 확대되고,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역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 지자체 지원만을 받기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지역관광협회 산하로 만들겠다는 지역관광협회장들의 판단은 잘못된 생각이며,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관광협의회’ 등장가능성에 긴장

여행신문 김선주 승인 2015.07.06

-8월19일부터 설립 가능...지역협회와 중복
-지역협회 대응책 모색 “보완 관계도 가능”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이 오는 8월19일로 다가오면서 관광 관련 기존 협회 및 단체의 역학구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관심사로 부상했다.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지만 그 역할과 기능이 기존의 지역별관광협회와 상당 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국회 발의 후 근 2년 만에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조항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8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신설된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역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업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지자체 위탁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 지역별관광협회가 광역지자체 단위로 해당 지역 내 관광사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협의회는 기초 지자체 단위로도 결성할 수 있고 관광사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자와 단체, 개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특정 지역 내 관광 관련 모든 당사자들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만 제외하면 사실상 기능과 역할은 기존 지역별관광협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각 지역별관광협회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전국 지역별관광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했다. 자칫하면 협의회에 밀려 관광협회의 위상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였다. 특히 협의회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등에 의존하는 관광협회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설수도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책이 거론됐지만 당장 이렇다 할 대책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아직 법률 시행 전이라서 과연 어떤 식으로 지역관광협의회가 설립되고 운영될지 누구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지역관광협회 회장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별관광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이 컸다”며 “지역별관광협회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보완 관계를 정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물밑작업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여행업·호텔업 등의 업종별협회와 지역별관광협회인 서울시관광협회, 반관반민의 서울관광마케팅(주) 등이 몰려 있고 여행사와 호텔, 국제회의업 등 관광사업체도 전국에서 가장 많기 때

문에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관광협의회’ 결성 움직임도 다른 지자체보다 거셀 전망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박사는 ‘한국관광정책 2015년 봄’호에서 “지역관광협의회와 지역관광협회 간 기능 재배분에 대한 갈등 요소가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 절차가 준비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관광협의회 출범 관련 가장 큰 상실감을 보일 수 있는 지역관광협회를 활성화시킬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기자